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3일, 박충권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 7. 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6.3.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3.11.)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박충권의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그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 산업과 일
자리가 점점 더 수도권으로 집중됨에 따라 지역은 청년을 중심으로
인구가 유출되어 가까운 미래에 소멸될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렇게

위기에 처한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고, 청년들이 지역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산업 경쟁력과 혁신의 원천인 과학기술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연구개발 투자, 연구기관 및 기업의 연구 기능, 우수한 연구인력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은 과학기술 역량이 부족하며, 여전히 정부 주도로 관련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이 과학기술에 관심을 갖고 지역에 특화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지역의 연구 역량을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기업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함으로써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지역 주도로 지역에 특화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산·학·연의 연구역량 강화 및 지역의 자생적인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대훈)

첫째, 「헌법」 제127조에서 과학기술 혁신과 인력개발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사무범위에서는 과학기술 개발 부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경제·산업 경쟁력과 혁신의 원천인 과학기술이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원으로서 가지는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겠으나,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은 한정된 재정 자원을 동원하여 국가 전체적인 차원의 문제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

셋째, 제정안은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혁신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가의 지역에 대한 기여나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지역의 국가에 대한 기여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과학기술혁신 역량이 미흡한 지역에 책무를 배제한 권한 이양만을 규정하는 것은 공공재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발생시킬 수 있고, 과학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한 지역에는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최형두)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